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아신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양 평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위 치

- 시 점 :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7-5번지
- 종 점 :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71번지

나. 사업의 종류 : 도로확·포장사업

다. 공 사 명 : 아신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농도208호선)

라. 사 업 량 : 연장 0.61km , 폭원 8.2m

마. 사업시행자 : 양평군수

바. 사 업 기 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2. 보상대상

가. 토지조서 :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 2020년 2월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1) 사업시행자 : 2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 2) 토지소유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구성요건 : 본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평군에 제출하여야 함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하되,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협의함.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장소

가. 기 간 : 2020.01.23.~2020.02.07. (15일간)

나. 장 소 :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031-770-2432)

5.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양평군청 건설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